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64

발의연월일: 2021. 1. 29.

발 의 자:서일준・이종성・서병수

하영제 • 이주환 • 김태흠

양금희 · 지성호 · 김성원

김용판 · 김정재 · 홍석준

정점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고시인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급격한 고용감소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고시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지 원금의 우선지원 등이 이루어지나,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 이 겪게 되는 생활고를 고려하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법률 제 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대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 2. 일자리 관련 사업비의 우선 지원
- 3.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 등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 제3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제4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_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
의 지원 등) ① (생 략)	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
<u> 정한다.</u>	한 고용감소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의 지정을 신청받은 고용노동
	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위
	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u><신 설></u>	④ 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으로 지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
	<u>하여야 한다.</u>
	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2. 일자리 관련 사업비의 우선

<신 설>

지원

- 3.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 급 생활안정 지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 제 3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의 지 정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지 정기간의 연장, 제4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